

법인 합병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2일	
합병되는 법인	갑	법인의 명칭			
		주소		(전화번호:)	
	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을	법인의 명칭			
		주소		(전화번호:)	
	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	법 인 의 명 칭				
	주 소		(전화번호:)		
	대 표 자 성 명		생년월일		
시 설 의 종 류					
합 병 사 유					
합 병 의 방 법 및 조 건					
합 병 시 기					

「궤도운송법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 피합병법인 대표자(갑)
 (서명 또는 인)

피합병법인 대표자(을)
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존속(설립)법인 대표자
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합병계약서 사본 2. 합병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그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.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.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 피합병법인 대표자(갑)
 (서명 또는 인)

피합병법인 대표자(을)
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존속(설립)법인 대표자
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
신 청 인	처리기관
	특별시 · 통합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
신고서 작성	접 수 제출 서류 검토 결 재
통 보	